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전략

이 상 민*

1. 서문
2.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특성과 수집전략 : 인권기록의 수집네트워크
3. 가해자의 기록 수집전략 : 중앙행정기관, 육군, 광주광역시 등 행정부 정부기관이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과 보상관련 기록
4. 피해자가 5·18 당시 생산한 기록과 5·18 실상에 관한 당대 기록의 수집전략
5. 피해자와 관련자의 기록화 수집전략: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구술사 수집
6. 제3자 기관의 기록 : 국회, 법원·검찰청, 외국 정부의 기록 수집전략
7. 결론 : 5·18기록 수집 네트워크의 기록 수집전략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투고일 : 2016년 1월 22일 ▪최초심사일 : 2016년 3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6년 4월 15일.

[국문초록]

이 글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것을 기초로 한 5·18기록 수집전략의 작성 방향과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5·18기록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몇 개의 중추적인 기관은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5·18기록을 기록화 전략을 통해 협력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5·18기록은 인권기록이며 여러 출처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집합체다. 5·18기록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인권기록 수집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권기록으로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기록원칙은 인권기록의 수집을 옹호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다출처 수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5·18기록 목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종합목록 포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화되지 않은 과거를 기록화하기 위한 구술사 수집이 5·18기록 수집의 주요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 구술사 수집이 5·18기록 수집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5·18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5·18기록 수집전략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기록 의식을 증진시키는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옹호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제어 :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 5·18기록,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수집정책, 수집전략, 세계기록유산, 인권기록, 기록화전략

1. 서문

2011년 5월 25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은 세계적으로는 ‘한국 광주에서의 군사정권에 대항한 1980년 5·18민주봉기 보존기록 인권기록유산’으로 알려져 있다.¹⁾ 이 세계기록유산은 억압에 저항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록이자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으로 인류가 길이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이하 ‘5·18기록’이라 함)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에 따르면,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이 기록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군데 모아져서 인권의식의 함양과 인도주의의 진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게 적절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²⁾ 이것은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약속이기도 하고 한국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5·18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이 기록들을 ‘5·18민주봉기 아카이브즈’ [2015년 5월에 광주광역시 소속기관

-
- 1)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본고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이라고 지칭했다.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4/human-rights-documentary-heritage-1980-archives-for-the-may-18th-democratic-uprising-against-military-regime-in-gwangju-republic-of-korea/> [이하 2015. 5. 10 접속 인용].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의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518archives.go.kr/?c=3/41/42>> [2016.4.15. 인용].
 - 2) ‘한국 광주에서의 군사정권에 대항한 1980년 5·18민주봉기의 인권기록유산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이하 ‘등재신청서’), Nomination Form,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Ref N° 2010-26*, 2010년, pp.3~4, p.8.

으로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했다]”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인권의식의 함양과 인도주의의 진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나 5·18기록을 수집보존하는 관련 아카이브즈의 기본적인 사명이 될 수 있다.³⁾

본고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5·18기록의 특성과 이 기록들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조건과 요구를 분석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아카이브즈가 추진해야 할 5·18기록—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거나 향후 등재되어야 할 범위의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5·18기록은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공공기록이 아니거나, 공공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영구’ 보존기록으로 책정되지 않은 채로 관리되다가 파기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속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관련 기록 수집은 2015년 12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에 제시되어 있다.⁴⁾ 이것은 법규상의 기록수집 근거 조항이며, 아카이브즈에서 통상적으로 보존기록의 평가선별 기준과 수집방식을 제시하는 수집정책이 아니다.⁵⁾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나 관련 아카이브즈는 정교하

3) 위의 글, p.8.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5·18기록의 수집에 관한 항목은 “제10조(기록물의 수집)기록물은 자체 발굴, 기증, 관리 전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11조(기록물의 수집대상)기록물 수집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5·18민주화운동 자료, 2. 국내·외 민주·인권·정의·평화 관련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http://www.518archives.go.kr/?c=5/27/77>> [2016.4.15. 인용].

5) 『기록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수집정책의 정의는 “보존기록관에서의 선별·평가 절차의 토대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및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된” 정책으로서,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립 지침 및 제한 사항, 타 기록관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협력 방향, 제적(deaccessioning)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152쪽.

고 효과적인 수집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수집정책에 따라 5·18기록을 체계적으로 풍부하게 수집해야 한다.⁶⁾ 5·18기록의 출처적·유형적 특성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억압 기록, 민주화운동 기록과 인권기록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기록윤리와 쟁점을 분석하여 5·18기록을 수집하는 기록보존기관에서 수집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본다.

2.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특성과 수집전략 : 인권기록의 수집네트워크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수집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5·18기록의 특성은 이 기록들이 인권기록이라는 점이다. 유엔의 2005년의 「인권증진보호선언」(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이러한 인권침해 기록들이 가해자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영구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⁷⁾ 이 「인

6) 5·18기념재단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미해결 과제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료 조사와 수집활용”을 ‘진실규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는 별개로 자체 아카이브즈의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명문은 5·18기념재단의 그러한 지향을 나타내준다. “5·18민주화운동 및 그 밖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 수집과 더불어 문헌기록의 사료적 공백을 메우고 5·18연구 활성화를 위해 오월관련자들에 대한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관련 아카이브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518.org/ease/menu.es?mid=a10207010100>> [2016.4.15. 인용].

7) 유네스코 UNHCHR(국제연합인권고등판문관실),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제3원칙: 기억을 보존할 책무. 어떤 국민이 그 국민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아는

권증진보호선언)은 인권에 관한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실을 규명할 천부의 권리, 기억을 보존할 책무, 피해자의 알 권리, 알 권리의 효과적인 보장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록평의회에서 2012년에 제정한 「보존기록접근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인권침해 기록이 설혹 비공개기록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천명한다.⁸⁾ 이러한 인권기록의 원칙은 5·18기록의 수집과 이용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 우선시되는 국가에서는 관련 기록법규(기록법과 정보공개법)를 이러한 인권기록의 원칙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규체제 아래에서는 기록생산기관에서 5·18기록 등 인권기록의 보존기간을 한시기록으로 책정해서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록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5·18기록을 수집할 때에는 이 기록이 인권기록이라는 특성을 인식시켜 수집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5·18기록은 출처가 다양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산재해서 관리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 등재된 5·18기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군과 중앙정부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와 군사법기관의 수사기록·재판기록, 김대중내란 음모사건기록, 시민성명서, 사진·필름, 병원치료기록, 국회 청문회 회의록, 피해자 보상자료, 미국 비밀해제 문서 등 4271권(85만8900여 페이지)의 기록 문서철과 필

것은 그 국민의 유산의 한 부분이며, 그러한 유산으로서,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침해에 대한 보존기록과 기타 증거를 보존해야 하고 그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식을 촉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국민이 그러한 역사를 알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이 집단적인 기억이 멸실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 특히, 그 인권 침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에 대항하여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005, p.7.

8) 국제기록평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보존기록 접근 원칙), “6. 기록관은 인권을 주장하거나 인권침해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확실히 보존해야 하며, 그 기록들이 비공개기록이라 하더라도 그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p.10.

름 2017개의 기록물이 포함된 방대한 기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 이 5·18기록들은 실제로 모두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수집, 소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5·18기록은 기록 출처(provenance)와 기록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육군, 광주광역시 등 정부기관이 생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
- 군사법기관이 생산한 5·18 당시 군사재판 기록과 ‘김대중내란음모’ 사건기록 등 수사 및 재판기록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생산한 유인물, 성명서, 선언문, 일기, 기자들의 취재 기록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원자료 기록
- 언론기관과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국 정부가 생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진기록 (시청각기록)
- 5·18기념재단이 수집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기록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과 관련자들의 구술사 기록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 국회가 생산한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과 청문회 기록
- 검찰과 법원에서 생산한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 재판기록
- 국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심의 및 집행 기록
-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기록

여러 출처에서 생산된 5·18기록은 현재 정부와 민간의 여러 기관에

9) <http://www.518mf.org/sub.php?PID=010303#record_process1> [2016.4.15. 인용].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으며, 상이한 관리방식과 상이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수의 출처에서 기록을 수집할 때에는 그 출처를 총괄하거나 조정할 수집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5·18기록을 수집하는 기관(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을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중추적 수집기관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복수의 출처와 복수의 개별 관할권(custody)과 복수의 소장처를 가진 여러 기록군들로부터 기록을 수집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일은 오직 기록의 ‘지적 통제’를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5·18기록 수집 네트워크 안에서 지적인 통제를 수행하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집 대상이 되는 기록의 목록 수집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출처로부터의 특정범위의 기록의 목록 수집이라는 수집 특성 상 이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의 통일적인 기술(記述)시스템이다. 다양한 출처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과 상이한 수준으로 기술을 수행하기 쉬우므로(이 기관들에서 표준적인 기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각각의 기록소장기관의 기록물 기술을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단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부딪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수집 대상 5·18기록이 공공기록에 속하며 공공기록은 궁극적으로, 그 기록이 영구기록이라면, 국가기록원이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될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5·18기록 수집 중추기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니라면 그 기록 수집네트워크가 수집할 공공기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될 영구기록의 사본이거나 ‘10년’ 혹은 ‘30년’의 보존기간을 가진 관련 한시 기록의 사본 혹은 원본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 기록 접근권의 제공과 기록 관할권의 양도에 관해 제도적으로 속박되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기관의 조직 문화 등에 의해 경직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5·18 기록 수집네트워크의 기록 수집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기록 소유권 혹은 관할권의 문제 외에 5·18 기록수집 네트워크가 부딪치는 문제는 기록 접근권의 양도 혹은 공유에 관한 부분이다.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공히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정보를 가진 기록물이 다수 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을 5·18 기록 수집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5·18기록 같이 복합 기록군(혹은 전종)들의 다양한 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은 각 출처 기록군의 기록 목록을 하나의 포털로 연결시켜 통합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별도로 독립된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구축하여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기록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구술사 기록 수집 등 지속적인 기록의 선별 수집을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와 기관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추적이고 솔선적인 아카이브즈의 존재가 필요하다. 어느 기관이 되었던 간에 이 중추적 아카이브즈에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5·18기록 수집과 관리를 총괄적으로 기획·실행하고 기록의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추적 아카이브즈가 결정되는 과정 중에 5·18기록의 수집전략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록출처를 가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군·기록시리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출처기관에서 각각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점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해자의 기록 수집전략 : 중앙행정기관, 육군, 광주광역시 등 행정부 정부기관이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과 보상관련 기록

이 공공기관의 기록군은 그 자체가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수집 기록물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기록물’이다. 이 기록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진상에 관한 기록과 그 이후 정부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들이다.¹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기록들은 공공기관이 파악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태와 희생 정도, 당시 정부와 군의 민주화운동 탄압과 시민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정책(언론정책, 보상정책 등)과 보상에 관한 기록이다. 단적으로 이 기록들은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 기록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을 주로 소장하고 있다. 이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은 전체 행정기관의 기록 범위에서 보면 매우 협소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¹¹⁾ 그러므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무엇보다도 5·18기록을 생

10) 이 행정부기록, 군사법부 기록, 광주시 기록의 상당 부분은 당시 신문기사 기사자료와 부정기간행물 자료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로 발간되어 있다. 1997년부터 매년 발간하여 2014년까지 총 17집, 61권과 2권의 색인목록집, 전자자료총서 등 119,700부가 발간 배포되었다. <<http://518center.gwangju.go.kr/contents.do?S=S23&M=010201000000>> [2016.4.15. 인용].

11)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록물 설명 중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의 설명,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중앙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계엄포고령의 시달과 함께 계엄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에 관한 공문서를 생산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지방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는 5·18사태일지, 피해상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체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자 명단 등이 있다. 경찰은 시민과 학생들 수 백 명을 포고령 위반죄로 구속하여 기소한 1980년

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관련 기록들이 있는지를 식별하고, 이러한 기록들이 한시기록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은 영구보존기록으로 선별·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한시기록으로 결정되어 있는 5·18기록을 평가하여 소장 기관에서 그 해당 기록이 폐기되지 않게 하고, 관련 기록들의 보존기간이 ‘영구’로 재책정되게 해야 한다. 이미 영구기록으로 혹은 30년 이상으로 보존기간이 책정된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국가기록원에서 30년 이상 보존기간을 가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재평가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조사하여 식별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록의 목록과 사본을 모두 조사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수행하여 5·18기록을 선별·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본으로라도 수집된 5·18기록을 기록조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각급 행정기관에 존재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공공기록물 중에서 영구보존 기록물을 선별·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5·18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어떠한 공공기록들이 정치권력의 인권 침해 기록인가를 판별하는 일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인 정부권력기관(군, 경찰, 정보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 이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을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을 보였고 과거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행정기관 내부의 냉소적인 시각과 비협조,” “내부문서의 문제, 조사활동에 대한 다

포고령 위반 처리지침 및 지시, 포고령 위반 무혐의 처리 수사기록, 포고령 위반사범 접수 및 조사현황 등을 생산하였다. 이 자료 원본들은 그 동안 광주동부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보존되어 있다.”
<http://www.518mf.org/sub.php?PID=010303#record_process1> [2016.4.15. 인용].

양한 저항”으로 인해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한계를 노정했던 경험이 있다.¹²⁾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체제가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국가의 억압 수단을 통해 국민이 과거 인종차별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 억압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정부 비밀기록이 주기적으로 폐기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부는 1990~1994년까지 권력 이행기-타협기에 대량으로 인권 억압 관련 기록물을 파괴했다. 남아공 진실위원회의 임무 중의 하나는 파괴된 인권침해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다고 한다.¹³⁾

공공기록물 중에서 민주화운동 기록과 인권 기록을 평가·선별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참가자와 피해자, 역사연구자, 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들과 기록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기록화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¹⁴⁾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즈(예를 들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혹은 레코즈센터로서의 기관 ‘기록관’)와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 과제의 수행은 정치적 기류와도 관련이 많고, 특정 지역의 아카이브즈와의 제한적 협력체제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기록물들 중에는 그것들이 가진 민감성으로 인해 기록물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한시기록으로 보존기간이 책정되고 이미 폐기된 기록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폐기대상 공공기록물들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민감하거나 중요한 기록들은 누군가에 의해 소장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보도자료」, 2007.11.28, 3쪽, 6쪽.

13) Randall C. Jimerson,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역,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342~348쪽.

14) 기록화전략에 의한 기록수집 방안에 대한 예시적 설명은 이상민, 「서울기록원의 기록 평가·선별과 서울현대사 기록의 수집」, 『향토서울』 제89호, 2015년 2월, 200~205쪽을 참조 바람.

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사후에 평가·선별·수집하는 일은 중추적 인권기록 아카이브즈의 핵심 업무가 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에서의 적극적인 기록 발굴·회수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록 수집과 맥락을 같이 한다.

행정부의 보존기록은 ‘기록화’의 결핍이나 중요 기록물의 폐기라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기 쉽다.¹⁵⁾ 이것은 과거사 진실의 파악과 국민의 권리 회복에 큰 장애가 되는 제약 요인이다. 억압정권하 정부활동의 기록화 한계와 정치적 운영(권력기관의 기록 폐기와 방치 등)으로 인해 국가 아카이브즈(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원)의 소장 기록물은 과거 정권의 국민 억압이나 인권 침해 조사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아카이브즈의 기록전문가들은 국민적 관심을 끈 사건과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에 관한 기록을 ‘영구’로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보존하게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기록관리체제에서는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의 기록전문가들이 이러한 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다. 현행 기관 기록물평가심의제도를 잘 활용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들이 영구기록으로 보존기간이 재책정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기록이 발견되면 5·18기록 수집 네트워크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수집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겪은 많은 국가 아카이브즈가 중요 국가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기록화에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또한 기존의 국가 아카이브즈의 보존기록관리 전문가(아키비스트)의 윤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부 국가 아카이브즈에서는 아키비스트가 그저 주는 기록을 받아서 보관만 하는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적 의미의 ‘기록화’와 거시평가론에서 말하는 정부의 정책, 활동 및 국민의 대응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록화를 모두 포함한다.

“중립적 보관자”라는 부정적 개념이 팽배하며 심지어 “행정관료의 시녀-노예”라는 패배주의적 자의식이 존재하여 수동적 개념과 부정적 자의식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기록관리에 개입하지 못했고, 정부활동의 충실한 기록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행정기관의 중요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에 대해 오랫동안 국가 아카이브즈가 관여하지 못했다. 행정부의 기록을 수집하고 평가·재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행정부기록 기록화의 부정적 특성을 알아야 하고, 국가기록원 등에서 소장한 보존기록의 태생적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한편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공공기록물 중 다수 기록물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공개 사유로 인해 일반 시민의 기록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존재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적 정보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별에 따라 정보 공개도 달리 하여야 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공공기록물에 대해 능동적(proactive)인 공개를 수행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안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록들과 개인정보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 침해를 증거하는 기록이라면 공개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인권기록에 관한 국제기록평의회(ICA)의 ‘보존기록 이용접근 원칙’은 인권침해 기록을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¹⁶⁾ 특히, 피해자는 자신에 관한 공공기록에 대해—설령 그 기록이 비공개기록이라고 하더라도—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습득한 기록을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16) 국제기록평의회, 「ICA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보존기록 접근 원칙), 6항. 이 원칙을 따르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공공기록물 수집과 적극적 공개는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나 ‘기록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광주시가 5·18 기록 수집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그 운영 예산을 지원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자, 연구자, 기록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거버넌스형 운영위원회에서 아카이브즈를 운영하는 것이 그러한 공공기록물 수집과 적극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공공 아카이브즈의 민간 위탁 운영은 공공기관이 아카이브즈를 설립하고 소장 기록의 소유권(관할권)을 가지는 이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2015년 4월 한국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기록학회 회장,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등이 관련 자문회의에서 광주시와 관련 단체에 권고한 바대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 및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와 광주시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 아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기록전문가 집단은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의 직접관리·운영’의 원칙 제5조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활동과 위탁운영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광주시의 협력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거버넌스형 아카이브즈 운영위원회에 의한 기록의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5·18기록 수집전략의 핵심적인 토대다. 이러한 아카이브즈 운영 구조가 확립되지 않고는 5·18기록을 체계적으로 충분

17) 한국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기록학회 회장,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 2015.4.7일.

하게 수집할 수 없다.

군이 가지고 있는 5·18기록에는 군사법기관이 생산한 군사재판기록과 ‘김대중내란음모’ 사건기록 등 5·18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은 1980년대 이래 육군법무관실이 관리하고 있다. 이 군사재판 기록들은 대부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기록들로서 당시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책정되어 폐기될 예정이었던 기록들이었으나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의 중요성에 주목한 군기록관리 담당자에 의해 폐기가 보류됨으로 해서 살아남은 기록들이다. 군법무관실 사건 기록은 연도별로 기록철 제목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정리방식에 따라 보관된다. ‘김대중내란음모’ 사건기록을 포함한 5·18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은 1999년 당시 다행히 폐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¹⁸⁾ 이 군사재판기록들은 정치인들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며, 당시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인권 탄압에 관한 핵심 기록들이다.

일반 공공기록물과 마찬가지로 이 군사재판기록들은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기록의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 기록들이다. 특히 출간되지 않은 군사재판기록은 민간 시민과 연구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군기록관리기관에 아직 기록전문가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기록들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정리와 기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5·18 당시 군사재판기록의 활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육군기록

18) 1980년 10월 26일 전두환 집권 이후 서울 대학가에서 최초로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한 고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계엄포고령 위반 시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록은 사건 기록철 제목의 첫 단어가 “고대”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앞에 배열되었었기 때문에,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록을 폐기했을 때 영구히 폐기되고 말았다. 같은 해에 있었던 연세대와 한신대에서의 시위에 관한 재판기록은 가나다 순으로 뒤쪽에 배열되어 있어서 폐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5·18기록유산으로는 ‘군법회의 재판기록 (광주사건 관련)’ ‘군법회의 재판기록 (내란음모사건광주사건)’ 등이 있다.

은 ‘특수기록관’ 기록으로서 일반 기록조사자의 접근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한 당시 5·18 관련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의 기록을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서 획득하여 사본(혹은 디지털 사본)으로 제작하여 당해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광주에서 경영을 위탁한 기록관”으로서—즉, 공공기록에 대한 접근권, 관할권, 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아카이브즈로서—육군의 기록보존기관과 협의하여 5·18 사건기록을 수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아카이브즈로서 군사재판기록물 사본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면서, 제3자 조사연구자에게 5·18 관련 군사재판기록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¹⁹⁾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 피해자들의 병원기록은 다수의 공공 기록(공공의료기관의 기록)과 민간기록(민간의료시설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의 기록은 원래 병원에서 생산한 환자진료·치료 기록이었으나 당시 군부가 자행한 시민 학살과 잔인한 폭력적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기록이 되었다. 이 유형의 기록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이 병원기록들이 공공기록물이므로 공공 기록관리기관(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만 관리해야 하는가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병원 치료기록은 공공기록물이므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관에서 관리해야만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²⁰⁾ 그러나 모든 공

19)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광주에서 시민사회에 전문적 경영을 위탁한 아카이브즈로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518재단 등 광주 시민사회와 기록관리전문가 단체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현재 소속기관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의 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 2015년 4월 7일. 여기에서 ‘기록관’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각급 기관의 현용기록 및 비영구기록 관리기관을 지칭하므로 영구보존기록관리기관인 아카이브즈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공기록물을 반드시 공공기관의 기록보존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이다. 의료기록이 민간 병원에서 생산되었다면 민간기록물이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생산되었다면 공공기록물이 된다. 국립대학병원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이다. 그중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10년 보존기간을 가진 한시 기록이다. 즉, 국립대학병원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폐기될 수 있는 기록들이다. 그렇다고 5·18광주민중화운동에 관련된 공공 의료기록들이 모두 영구보존기록물로 책정된 것도 아니다. 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해 영구보존기록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보존기간 재책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시 기록인 병원 진료기록을 공공부문의 기록관리기관이나 혹은 보존기록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 혹은 공익재단에 속한 기록관리기관이 이관받아 영구보존기록으로 관리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록은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생산기관에서 폐기되지만, 자체적인 연구를 위한 이용이나 장기적인 진료 서비스를 위해 장기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환자 개인에 관한 기록물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기록이다. 의료기록은 병원의 접근 권한이 있는 자와 당사자만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 기록이다. 기록물 가공처리를 수행하는 기록관리기관 외에는 병원이 아닌 제3의 공공기관도 접근할 수 없는 기록들이다. 그러나 역사적 연구를 하려면 연구자가 의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 이는 2015년에 5·18 세계기록유산에 어느 기록보존기관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해석이다. 거버넌스형 공공기록관리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수집한 보존기록을 민간 혹은 정부·민간협력체 아카이브즈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반드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시도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해자와 부상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이 광주시 등 공공기관에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공됨으로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으로 전환된 것은 5·18 의료기록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간 의료기록의 원본은 여러 병원에 산재해 있으며 의료 기록의 법적인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에는 보존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도 법적인 보존기간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대부분 폐기되었어야 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어도 잘 폐기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대부분의 현존 병원 치료 기록은 희생자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보상을 청구한 개인이 갖고 있던 기록이거나, 병원이 폐기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던 기록이거나, 개인이 병원에 요청해서 발급받은 기록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기록들은 주로 공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로서 그 원래의 출처가 민간병원일 경우에는 민간기록이다. 광주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서 공공기록이 된 민간의 병원 치료기록이나 공공 병원의 치료기록은 대부분 사본기록이다.

이러한 병원 진료기록들은 어느 아카이브즈에서 누가 관리하던 간에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록이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역사적 조사연구를 위해 공공에게 이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수집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다수의 피해자·희생자 관련 시민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수집될 수 있는 기록 종류이지만, 공공부문 기록관에서는 이미 보상 및 명예회복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러한 5·18기록 수집을 더 이상 수행하지는 않는다. 군부의 시민 학살과 잔인한 폭력적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이러한 기록들을 추가로 수집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료기록이라는 이유로 연구자에게 기록을 제공하지도 않는다면 사실상 이러한 병원 진료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의미가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 학살과 인권 침해에 대

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병원 진료기록을 제공한 개인의 기록 제공과 그 기록의 열람과 이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기록 수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보상과 관련하여 시민 개인이 제출한 아래 서술한 보상관련 기록과 더불어 이러한 병원 진료기록들은 시민과 병원이 그 원본기록의 출처이며 공공기관은 업무를 위해 단지 사본의 위탁 관리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그러한 사본 기록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어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러한 병원 진료기록의 관할권 문제와 이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의료기록은 법률전문가와 기록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만 안전하게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생산된 5·18기록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심의 및 집행 기록 유형이 있다. 이 기록(시리즈)의 다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을 심의하고 집행한 광주시가 생산한 기록이다. 현재 3,88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기록(시리즈)의 일부는 법원이 생산한 판결문 사본 및 증언 기록으로서, 5·18희생자 보상 심의 및 집행을 위해 희생자·부상자 혹은 그 가족이 피해의 증거로서 제출한 기록이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소장한 기록이므로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행정부 행정기관 기록의 평가, 수집, 이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시리즈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대하다. 광주시의 보상 심의 및 집행 기록 시리즈에 있는 상당수의 기록이 개인정보 기록이다. 이 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심의 보상 신청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혹은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들 중 상당수가 접촉하기 어렵거나 이 기록들의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당해 5·18 의료기록을 생산하거나 제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광주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획득하는 일뿐이다. 광주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카이브즈 기관 운영을 시민에게 인지시켜 대중의 신뢰를 획득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역으로 기록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는 등 기록의 수집과 이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 피해자가 5·18 당시 생산한 기록과 5·18 실상에 관한 당대 기록의 수집전략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관련자의 기록에는 유인물,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등 원사료 기록과 국내외에서 생산된 시청각 기록이 있다. 당시 광주의 시민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한 기자들이 출처인 이 유형의 기록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과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 시민적 가치, 시민의 덕목을 잘 나타내주는 기록이며, 광주시민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당시의 활동과 희생, 억압적 정치권력의 시민 학살과 정치적 탄압, 인권의 심대한 침해를 증거하는 핵심 기록들이다. 한때는 이와 같은 유형의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조차 개인의 신상에 위협했고, 정치적 자유와 알 권리의 대한 침해 등 인권의 침해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기록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5·18재단 등의 적극적인 기록 발굴과 수집 노력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기록들이 수집되기 시작했다. 이 출처의 기록 유형은 특히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서의 민간 기록물 수집의 제도적·법률적 중요 쟁점을 제기한다.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는 이러한 당대 시민이

생산한 현장 기록과 관련 민간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조직·기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관과 국가기록원의 민간 기록물 수집체제, 수집량, 사료의 질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²¹⁾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심대하고 그 영향이 후대에 크게 미치는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만으로는 그 면모와 사회상, 그리고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 당대의 사회적 표상과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기록은 결국 당대를 살아간 인간과 사회집단에서 생산한다. 당대 시민의 활동과 삶을 기록한 일지나 일기 기록은 그리고 후대의 사후적인 구술사 기록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며, 당시 군부와 광주시민의 상호 작용의 기록이다.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시민의 증거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5·18재단 등 시민사회가 많이 수집한 이유는 민간기록 수집의 특성 때문이며, 공공기관의 기록관에서 당대 사회의 주요 활동과 가치를 대변하는 기록선별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그동안 숨겨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었던 많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찾아내고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상시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5·18기록 수집활동을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5·18과 관련된 인물과 사건에 대한 특화된 기록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이런 유형의 5·18기록의 수집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

언론기관과 미국 국무부 국방부가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

21)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추진했던 민주화운동 사료 기증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존기록물 기증 캠페인이며 사료관의 소장 기록물은 주로 시민이 기증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사진기록 및 시청각기록은 출처와 기록의 물리적 형태에서 나오는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사진기록물은 보다 감각적으로 직접적이며 파급력이 크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자에 따라 정치적 당파성과 편파적 단편성을 가지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청각기록물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시민의 머리를 곤봉으로 구타하고 있는 집압군의 사진과 진압군이 시민의 시신(혹은 부상자)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사진은 폭력적 억압과 극단적인 인권 침해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양심과 인권 의식을 자극한다.²²⁾ 시청각기록물은 어떠한 문서 기록물보다 당대의 시대상을 나타내준다. 당대의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보존하는 일은 역사의 한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다.

억압적인 정권 시기에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의 항의 시위, 민주화운동 같은 정치적 사건이나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이 생산·보존되기 어렵다. 경찰, 정보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시청각 기록물들은 조직 내에서 폐쇄적으로 관리되다가 폐기되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국내외 기자들과 외국정부기관이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국내 언론들로부터도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해야겠지만, 외국 언론인과 외국정부기관들로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청각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외국 언론인이나 외국기관이 이런 시청각기록물의 대부분의 출처라는 특성은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서 시청각기록 수집업무가 외국 언론인, 언론사나 외국 사회단체,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

22) 5·18에 관한 대표적인 필름 기록을 촬영한 기자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이다. 그는 5·18 실상을 전세계에 폭로했다. “힌츠페터의 필름은 독일 제1공영방송 아에르데(ARD)의 뉴스를 통해 방송됐고, 그해 9월17일에는 <기रो에 선 한국>이라는 제목의 45분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다. 80년대 중반 ‘광주민주항쟁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가에서 상영되며 87년 6월항쟁의 ‘문화적 동력’ 역할을 한 비디오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한겨레신문, 2003.1.28.

여 수행해야 하는 국제업무가 되게 한다.

당시 국내 언론이 보도한 사진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가치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편향적인 기록물들이지만 인권의 억압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의도와 면모를 또한 드러내어 준다. 이러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및 시청각 기록을 균형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기록조사 연구자의 몫이지만, 이런 편파적 기록들이 적절하게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즈에서 기록전문가들이 그 출처에 관한 정보와 기록의 맥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워르겐 힌츠페터 같은 외국 기자들이 5·18현장에서 취재하고 생산한 기록을 수집하고 단순하게 소장 목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기록서비스가 될 수 없다.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에만 치중한다. 조사연구자의 기록물 이용을 확대시켜, 기관의 사명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해야 하는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 자체 보다는 맥락의 기술(記述)과 기록의 해석, 나아가 중요 기록물의 편찬을 도모한다.

5. 피해자와 관련자의 기록화 수집전략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구술사 수집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및 구술사는 5·18기념재단 등 민간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한 대표적인 기록 유형들이다. 이 기록들은 당대 기록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보여주고, 군부의 폭압적인 인권 탄압을 증명하는 보완 기록들이다. 약 5,000여명의 피해자와 관련자 중에 1,500명의 부분적인 증언 혹은 구술 기록이 생산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5·18 가

해자의 형사적 면책에 대항해서 사회의 기억으로 남기는 투쟁을 할 수 있다. 억압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공기록은 은폐되거나 폐기되기 쉽다. 진실을 알려줄 만한 기록은 일찌감치 선별되어 체계적으로 폐기된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수 백인정권에서 다수 민중정권으로의 전환기에 백인이 지배적인 국가억압기구에서 광범위한 기록물 파괴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억압적 행위가 종료되었을 시점에서 관련 기록물들이 다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각종 진실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을 때 각급 기관에서의 기록조사에 관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공공기록물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도 많지 않았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물이 다수 결핍된 현실, 즉 “충분하고 완전한 기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록화전략’에 의한 사후적인 기록의 수집이 불가피하다.²³⁾ 국제민주이행기정의센터 기록화친화집단은 기록화가 인권 옹호 활동의 핵심이라고 간파한다. 이 인권기록단체는 과거의 억압과 인권 침해에 대해 희생자가 “이야기하기”(telling the story)를 격려하고 이것을 기록화하여 수집할 것을 권고한다. 가능한 정확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침해 사실의 발견과 가해 책임자의 식별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인간사회의 심층적 문제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왜 사람들이 이러한 억압과 침해가 자행되도록 하게 했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었는가 등에 대해 질문한다. 이 기구가 2009년에 발간한 『진실의 기록화(Documenting Truth)』는 당대 피해자와 목격자로서의 시민의 증언과 구술사의 기록화와 기록관리의 지침서로 유용한 자료이며 이러한 유형의 기록의 수집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²⁴⁾

23) 이상민, 「서울기록원의 기록 평가·선별과 서울현대사 기록의 수집」, 200~205쪽.

24) The Documentation Affinity Group,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ICTJ), Documenting Truth, 2009, p.5.

어떤 역사적 사실의 총체적인 진실은 다수의 참가자와 목격자의 증언에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의 참가자와 목격자가 가지고 있는 한시적이고 개인적인 기억을 한 사회의 항구적인 ‘집단적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전문적인 구술사 기록 수집 분야에 속한다. 구술사는 ‘구조화되고 사전 연구가 충실한 역사적 질문’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의 증인이나 참가자를 체계적으로 인터뷰하여 그들이 구술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수집된다. 구술사는 원래 무형적인 역사적 증거를 기록으로 써서 보존할 목적으로 수집되었다. 구술사를 수집하는 이유는 문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되어 있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 역사적 참가자의 시각과 역사적 행위의 이유와 그 과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증언을 수집하여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하고, 보존적인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구술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한 개인의 직접적, 1차적인 체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존하여 연구자가 이용하게 해준다.

구술사 기록의 수집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구술사는 구조화되고, 주제나 사건에 대한 사전 연구가 충실한 인터뷰 개요와 인터뷰 질문을 통해 구술자로부터 정보가 수집된 것이어야 하며, 통제·관리되고 기록화된 인터뷰 환경에서 채록되어야 한다. 구술사는 어떤 사건의 목격자나 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1차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어야 한다. 구술사는 수집 및 처리 이용의 각 단계에서 저작권,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인권침해기록의 수집 행위에 의해 희생자와 목격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건드리거나 그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구술사 수집자는 인터뷰 시에 구술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인터뷰 절차와 과정 중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야 한다. 구술자의 프라이버시의 존중, 기존 역사적 해석과 상이한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의 존중, 구술자에 대한

압박이나 반박 질문이 잘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술사 수집을 위해서는 구술자의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사 수집자는 구술사 프로젝트의 목적, 배경, 범위, 과정, 수행 방식, 기대치, 결과물의 이용에 따른 문제, 저작권 권리의 양도 문제, 제3자나 구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해 구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수집되는 구술사 정보 내용에 나타난 구술자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공익/공공안전 목적 혹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구술사 정보 내용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술사 정보 내용의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등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일반적인 연구윤리와 역사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충실한 역사적 인터뷰를 준비할 의무가 있으며, 구술사 주제/사건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예를 들어, 5·18광주민중화운동)의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역사적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구술사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증거편의주의, 목적에의 경도, 부분의 일반화나 전체화, 주관화의 은폐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구술사 수집은 구술자가 구술수집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 체험과 관점에 의한 설명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구술사 수집자와 피구술자의 당파성에 따라 사건이 이해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양자에게서 공히 역사적 사실의 인식과 역사적 해석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실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료비판 기술이 필요하며, 구술자나 구술수집자의 주관성과 상이한 세계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구술사에 나타난 사실에 함축된 주관성과 이데올로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²⁵⁾

25) 이상민, “대통령 구술사 수집과 이용에서의 윤리적 법적 문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구술사세미나” 연구발표문, 2009.11.25.

구술사 기록의 수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록 수집방식으로서, 한정된 예산과 정형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직제와 업무분장이 고정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보존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기록관’(예를 들어 국가기록원이나 광주시 기록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업무다.²⁶⁾ 구술사 기록물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출처의 기록물이므로 기증 약정서나 기록물공개이용 동의서 등 기증 조건, 기록물의 소유권, 관할권, 접근이용권,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증자와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검토와 그 합의의 장기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구술사 수집 기관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적 구술사 수집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공공부문의 아카이브즈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의 구술사 수집 현황을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대통령기록 구술사를 수집한 바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학술진흥기관에서 한국 정치사에 대한 장기적인 구술사 수집 프로젝트를 학계의 연구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특정 아카이브즈가 구술사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것은 구술사 수집자의 개인적 전문 역량과 전문기록관리기관의 기록수집 역량

26) ‘기록관’은 독자적인 영구기록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나 일반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영구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전에 관리하는 한시기록물 관리기관을 가리킨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3조). 이 기록관체제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요 기록을 당해 기록관에서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기록관의 기록 기술과 이용서비스 특성을 약화시킨다는 큰 약점이 있다. 해외 사례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싱가포르 국가기록원은 구술사 수집을 장기적으로 대규모로 수행하고 있다. 구술사 표준업무절차와 방법론도 개발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도 구술사 수집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연방행정기관의 구술사 수집은 하지 않는다.

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전문적 구술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아카이브즈로 발전되어야 한다.

구술사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즈는 일반적으로 구술사 내용의 프라이버시와 위해성이 있는 정보를 보호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구술자와 구술 내용에 있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와 민감한 정보를 법제도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미비하고, 충분한 정보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성조차 갖고 있다. 적어도 공공부분에서는 구술사를 생산 보존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 아카이브즈에서 기록물의 정보 보호와 적법한 공개를 보장하는 정치적·행정적 환경이 열악하다. 공공부문 아카이브즈를 옥죄는 권력기관, 정보기관, 수사기관 등의 정치적 압력, 상급 행정기관의 비전문적 정책과 지시로부터 전문적 아카이브는 보호되어야 할 구술사 내용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보를 가진 기록들이 임의로 공개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공공부문 아카이브즈에서는 이러한 구술사 기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쉬우므로 구술사 기록의 수집조차 용이하지 않게 된다. 5·18기록을 수집하여 이용 제공하는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중추적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카이브즈가, 정보의 보호와 통제에 있어서 정치적 압력, 상급 행정기관의 비전문적 정책과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기록전문가 및 시민사회에 의해 거버넌스 협력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린다 슝스는 “구술사 인터뷰는 단순히 경험적으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야 하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투명한 문서가 아니다. 구술사 인터뷰는 말로 하는 역사적 사건의 설명이다. 구술사 인터뷰는 개인 기억의 인공적 산물이며, 이데올로기이며, 언어

적 표현이며, 구술사가와 구술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²⁷⁾ 민주화운동과 인권 경험의 구술사는 단순히 연구되어야 할 역사 사료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역사적 사건의 설명이다. 국가 아카이브즈는 이러한 구술사 기록의 특성(개인의 기억이자 개인의 역사이면서 개인의 역사 해석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구술사 기록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구술사 기록이 민간 기록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아카이브즈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6. 제3자 기관의 기록

: 국회, 법원·검찰청, 외국 정부의 기록 수집전략

국회가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과 청문회 기록도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주요 수집 대상이다. 영구보존 국회기록물은 국회도서관 소속의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이런 종류의 기록을 찾아 활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최소한의 소장 기록물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²⁸⁾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27) Linda Shopes “Legal and Ethical Issues in Oral History,” Handbook of Oral History, Altamira Press: Lanham, MD, 2006, pp.158~159.

28)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회기록 정보를 2016년 4월 20일부터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고 한다. 이 새로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서는 국회 소속기관에서 이관한 기록물과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국회사 연표, 국회간행물 등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구축한 주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기록물 검색 시스템을 통해 5·18기록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규명 청문회 기록들의 상당수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부분이 있지만, 그 속기록이나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관련 국회 기록이 영구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목록과 더불어 국민에게 제공된 적은 없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당해 기록시리즈에 대한 목록정리 및 기술 작업을 가능하다면 국회기록보존소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당해 국회기록물의 사본 제작을 통해 국회가 소장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수집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출간된 청문회와 위원회 회의록을 수집하여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아카이브즈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자체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소장 기록을 정리·기술하므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청문회 관련 기록이 우선순위에 놓여있지 않을 수 있다. 기록을 기술하고 검색보존도구를 작성할 기록 전문직이 두세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앞으로도 5·18기록이 우선적으로 정리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와 같은 기관 간의 협력 작업을 통해 국회기록보존소가 소장한 5·18 관련 기록을 우선적으로 정리·기술하여 그 신속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서 설립된 아카이브즈(5·18민주화운동기록관)가 헌법기관에 속한 입법부의 국회기록보존소에 이러한 공동 기록정리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직접 국회기록보존소와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일)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국회가 생산한 5·18기록의 목록을 조사확인하고 사본을 수집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방송사에서 TV로 실황 중계한 청문회의 녹화 필름과 다큐멘터리 기록은 5·18 진상 규명의 중요한 자료다. 이러한 기록들의 목록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당시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국회 해당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청문회 내용을 분석하여 수집할 국회기록의 목록을 결정해야 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국회 청문회 기록의 이용과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고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사의 기록을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아카이브즈에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 아카이브즈에서의 저작권 기록의 복사와 열람은 개인에게 허용되지만, 저작권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과 그것을 2차적으로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법원과 검찰청에서 생산한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 재판기록은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사본으로 수집하여 조사이용자에게 제공할 기록이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형사 사건인 경우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재판기록의 판결문 등본만을 보존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 재판기록은 형사사건이므로 판결문 원본과 사건기록은 검찰청 기록에 해당된다.²⁹⁾ 재판기록 역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이며 이로 인해 일반인이 기록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다. 우선 법원이나 검찰청이 소장한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 재판기록 목록(기록철 목록이나 기록건 목록)이 제공되고, 목록에 있는 기록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검찰청의 관련 사건기록이 영구기록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는지 한시기록으로 폐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건기록은 짧게는 5년 만에 폐기되기도 하고 형벌의 집행과 관련된 기준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³⁰⁾ 근본적으로, 이 재판은 군부의

29) 고선미, 「법원기록의 유형과 관리제도」, 국가기록원, 『기록인』, 창간호, 2007, 81쪽.

30) 이현정, 「검찰기록의 유형별 특징 및 관리방안」, 국가기록원, 『기록인』, 창간호, 2007, 84~87쪽.

불법적인 권력 찬탈과 그렇게 하여 성립된 정치권력의 불법적 행위를 재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기록은 이 권력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제연합의 인권선언과 국제기록평의회(ICA)가 제정한 ‘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이 내란죄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자를 구체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 내란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가 이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의 구체적인 희생자 집단이 될 수 있으므로 검찰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기록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원기록보존소와 검찰청-국가기록원이 국제기구의 인권기록 접근원칙에 따라 기록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연구자들이 당해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서 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일은 타 기관의 아카이브즈와의 공동의 기록관리 필요와 긴밀한 협력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국가기록원과 입법부, 사법부의 기록물관리기관(법률에 따른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어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양한 출처의 기록군을 연결해야 하는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타 기관의 아카이브즈와 공동으로 기록 목록 수집과 기록 이용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아카이브즈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록은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수집되어야 할 기록 범주다. 특히,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5·18 관련 기록시리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보고서와 미국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부에서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미국정부의 기록들로서 당시 미국정부가 수집하고 분석한 군부의 행동과 의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생산 당시에는 비밀기록으로 생산되었다가 ‘비밀정보관리 대통령명령’(2003년 이후 Executive Order 13292호, 현재 Executive Order 13526호)에 의해 25년이 경과한 후 비밀이 해제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비밀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비밀보호 기간 중에 있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미국정부의 비밀기록을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비밀 해제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연구자도 FOIA 신청을 통해 기록을 파악하고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외교·첩보 기록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많이 비밀이 해제되고 일반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기록이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외국 정부에서 국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을 생산했다. 이러한 외국이 생산한 한국 5·18 관련 기록은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 파악되고 수집될 수 있는 기록들이다. 미국정부의 비밀기록과 같이 외국의 국가기록이 다른 나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일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아카이브즈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을 찾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외국의 5·18 관련 기록은 피해자·희생자의 보상 심의에 채택될 증거기록이 되기도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2차 심의 신청자 중의 일부는 5·18 쿠데타 당시 광주에서의 인권 탄압과 광주시민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 구금, 제적, 고문,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계엄포고령 위반 판결문에는 군부의 지시로 인해 “광주”라는 글자가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후에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심의 신청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광주”와의 연관성이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언급한 10월 26일의 고대시위 사건의 참가자로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던 필자는 미국 국무부

의 비밀해제 전문에서 고려대에서의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시위에 관한 미국대사관의 보고 문건을 찾아내어 그 원문과 번역문을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여, 신청자 전원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학에서의 시위를 주도한 활동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희생자들에게도 적용되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시공간적 의미를 확대했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외국의 기록관리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하여, 외국에서 생산한 5·18기록을 찾아내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적 사료수집기관이 외국의 보존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왔고 역사연구자에게 제공해왔다. 외국 국가기록수집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유관기관과의 기록수집 공동협력을 통해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해외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조직적으로 속해 있음으로 인해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아카이브는 이와 같은 국내외 협력적 수집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해외의 5·18 관련 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7. 결론 : 5·18기록 수집 네트워크의 기록 수집전략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집되어 인권의식의 함양과 인도주의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이용됨으로써 인류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검토한 대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서 5·18기록의 특성에 따라 5·18기록을 수집하는 전략을 수립하되, 기록전문가와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한 수집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하다. 총괄적으로는 거버넌스형 아카이브즈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5·18 기록 수집네트워크의 기록화전략과 협력적 방식을 통해 5·18기록이 수집되어야 한다.

5·18기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기록들이 인권기록이라는 점이다.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록이자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적 통합과 인도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토대가 되므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에서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으로서 5·18기록을 적극적으로 조사·수집해야 한다. 국제적인 인권 원칙에 따라 인권 침해 기록은 원칙적으로 폐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은 그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조치와 고려가 필요하다. 인권 기록 특성을 반영한 개선된 기록 수집 환경에서 인권 침해를 증거하는 기록을 소장한 기관의 수집 협력이 격려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침해기록의 [보존기간 종료에 의한] 폐기 금지와 수집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공공기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인권기록이라는 특성에 기반한 5·18기록 수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5·18기록은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이며, 따라서 출처 조직과 기록 유형에 따라 상이한 수집전략과 목록 수집 우선 전략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복수 출처의 기록을 수집하는 효과적인 방식은 5·18기록의 목록 수집과 기록 기술과 검색이용을 위한 포털을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생산되고 보존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을 관할하는 복수의 기록관리기관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기록을 수집할 기능이 나 역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5·18기록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

을 계기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5·18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도 수집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5·18기록 수집 네트워크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5·18기록을 조사하여 의미 있고 활용될 수 있는 종합 목록을 구축하는 일과 그것을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일은 5·18기록의 다출처 특성에 나온 효과적인 수집 전략이 될 수 있다.

관련 기록이 폐기되었거나 국가의 기록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구술사 기록의 수집은 "기억의 기록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구술사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5·18 구술사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속한 기록관리기관은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구술사 수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민관 협력체로서의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조직과 기능에는 구술사 수집 업무와 전문 직제가 장기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18기록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이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기록평의회(ICA)의 '기록 접근 원칙'은 인권 침해의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인권 침해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기록"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의 기록관리기관은 5·18 기록의 이러한 특성과 접근 원칙을 고려하여 관련 기록 조사 수집에 협력하고, 관련 기록이 한시기록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보존기간을 재분류하여 폐기하지 말아야 하며, 가해자의 개인 정보 등 비공개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과거의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들은 기본적으로 영구보존기록이므로 「공공기록

물관리법」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첨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5·18기록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몇 개의 중추적인 기관은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5·18기록을 협력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5·18기록은 인권기록이며 여러 출처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집합체다. 5·18기록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인권기록 수집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권기록으로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기록원칙은 인권기록의 수집을 옹호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5·18기록 수집네트워크는 5·18기록 목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집전략이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화되지 않은 과거를 기록화하기 위한 구술사 수집이 5·18기록 수집의 주요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 구술사 수집이 5·18기록 수집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5·18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공공기관은 자신이 생산한 기록을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기록은 국민의 기록이며 국민의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이다. 이러한 공공기록 인식을 확대 강화하는 일도 5·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추진해야 할 옹호활동과 외연활동이다.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과 국민의 의식이 5·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5·18기록 수집을 지원할 것이지만, 기록전문가들은 기록원칙과 기록전문가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5·18기록 수집을 지원하거나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Archives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for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Democracy

Lee, Sangmin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y 18th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to suggest a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May 18th archives collection network. Individual public and civilian archives collecting the May 18th archives separately should form a cooperative collection network based on documentation strategy. Most of all, May 18th archives are human rights records and should be understood and collected as human rights records. International principles support the collection of the May 18th archives as human rights archives by prohibiting destruction of relevant temporary records and encouraging the victims' right to access to their records. As the May 18th archives were mostly produced by many multiple agencies, this multi-provenance and diversity of the records necessitate the building of an archives portal for the records registries and online search. To document the undocumented past and the victims, the collection network should focus on oral history project as a major part of its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Finally, the May 18th archives collection network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nwilling public agencies which have the archives holdings. Therefore, the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should include advocacy and awareness

activities for promoting cooperation from these public agencies and public archives, and the people in general.

Key words : May 18th records,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5·18 archives, MOW, human rights records, documentation strategy